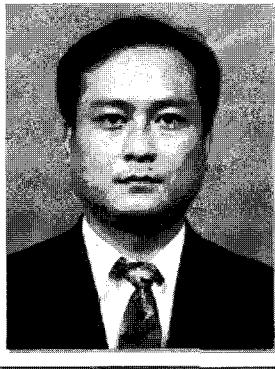


법 위반 현황 분석을 통한 준수편람 제작 및 향후 업무 추진·운영 방향



김 남 정

삼성전자 업무팀 부장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은 그간 공정거래법의 중요성에 비추어 낮게 평가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준수편람 제작의 기본 개념을 관련 부서 공정거래 업무 추진자가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할 것이며, 특히 공정거래법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 활용도를 제고토록 할 예정이다.

① 서 론

공정거래법의 모태가 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즉, 「공정거래법」이 지난 1980년에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어느덧 20년이 되고 있다. 그간 급변하는 경제 상황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법이 개정되면서 '자율 및 공정경쟁 사회 구현의 기틀'을 다지는데 큰 공헌을 하여 왔고 또 일반 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도급법」, 「약관법」, 「표시·광고법」 등도 많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작금에는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1인 1PC시대가 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각종 법률 내용이 정비되면서 실생활을 많이 투영해 가고 있음은 우리 모두가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당사는 지난 '94년 그룹정신 재무장 운동의 일환으로 대외에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던 "신 경영 선언"을 당시 공정거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당 부서에서는 공정한 경쟁문화 기반 구축의 계기로 삼고자 국내 업계 최초로 「공정거래 준수 편람」이라는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전 사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

준수편람 배포로 과거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오

던 각종 불공정 행태가 일순간에 개선된 것은 아니다. 준수편람 배포 후 전 사에 확산된 경과 시점을 감안하여 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분석해 보면, 신경영의 이념과 준수편람이 실무에 적용되기 이전에는 공정거래법상 가장 기초적이고도 전형적인 불공정 문제가 주로 지적되었으나, 준수편람 활용이 정착되고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한 '97년 이후에는 그 동안 사내에서 문제점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근원적인 사항이 (내부거래, 부당지원 등) 지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발생된 문제 유형은 이제까지 공정거래법상 특징적으로 별도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분야인 '대리점 및 수급사업자와의 계약 관계' 및 '전자상거래', '표시광고' 등에서 문제를 나타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기본적인 문제는 사내에서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최근에 공정 위로부터 지적되고 있는 법 위반 사실은 종전과는 달리 공정거래법상 복합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제작되는 준수편람은 전 사의 관련 부서가 근원적으로 공정거래법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제작될 필요가 있다.

〈당사의 최근 4년간 제소 및 조치 결과〉

구 분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총 건수	19	32	19	19
조치사항	2 (1)	2 (1건은 소송중)	2 (2)	2 (1)

주) ()의 수치는 공정거래법상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지적된 건수임.

● 본론

당사가 국내업계 최초로 발간하였던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은 그간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이 갖고 있는 중요성에 비추어 낮게 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사내에서도 정부에서 제시하는 규제법 수준에서 이해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당초 당사가 준수편람을 최초로 제작할 당시에도 이런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공정거래법을 사내에 인식시키고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하였으나, 앞으로는 준수편람 제작의 기본 개념을 관련 부서 공정거래 업무 추진자가 실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만들 예정이며, 특히 공정거래법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사례 및 판례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무 활용도를 제고토록 할 예정이다.

먼저, 준수편람 제작시 강화되어야 할 분야로는 단순히 소비자와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닌 소비자를 비롯한 거래 상대자의 권리 을 능동적으로 향상시키는 수준으로 편람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한다. 종전의 편람은 생소한 공정거래법 이론을 확산시켜 그 중요성을 부각하는 측면에서 정리되어 모든 이들이 손쉽게 접하고 업무에 참조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으나, 향후는 단순한 이론의 전개보다는 그 동안 공정거래 업무를 추진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각종 심결례 들 중에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여 각 협업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각종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펼쳐져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예측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한다.

업무 추진적 면에서는 전자상거래 등과 같이 종전까지는 명확한 개념조차도 정의되지 않았던 거래형태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할 것이다. 즉, 업무 특성상 공정거래 업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서인 영업, 구매, 경리부서의 중간 관리자들을 ‘공정거래 업무대응 전담자’로 지정해 월 1회 이상 정기 업무개선회의를 실시하여, 당사의 업무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불공정한 업무 행태를 발굴, 적기에 개선시키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 나갈 것이다.

둘째는 기본에 충실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당사가 모든 소비자(수급사업자 포함)를 상대로 추진하려는 제도와 정책 모두가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공정거래법을 준수치 않고는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할 것이다. 특히, 제도와 정책이 당사와 거래 과정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을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 서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와 관계되는 각종 계약서, 약관 등 그동안 소홀히 다루어져 왔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당초부터 문제 분야에서 제외시켰던 각종 정책을 변화된 소비자의 시각으로 재조명하여 전 근대적인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가 없는 동등하고도 평등한 말 그대로 ‘공정한 거래’가 되도록 기본 업무를 시정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 사가 동참하는 방향으로의 업무 SYSTEM을 구축하겠다. 이제 공정거래법은 특정 부서, 특정인에 의해 추진되는 법이 아닌 위로는 대표이사에서부터 아래로는 말단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구성원들이 동참할 때만이 정착되는 제도가 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지속적으

로 해 나갈 것이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부문별 사건 발생빈도를 관리해 문제가 다발하는 부문을 상대로 집중적인 사내 교육과 필요시는 공정거래분야의 유력인사를 초빙하여 그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예정이다.

본인이 위에서 제시한 준수편람 운영방안과 몇 가지의 업무 추진방안은 단순히 향후 당사의 편람 제정 방향도 될 수 있겠으나, 공정위 업무를 주관하는 입장에서 추진하려는 업무 목표이기도 하다.

❸ 결론

이제 공정거래법은 오늘날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가는 경제 주체자 모두가 피해 갈 수 없는 현실적이고도 최소 한도의 기본 요건이다. 이 기본 요건을 피해가거나 줄여서는 우리의 위상은 그 빛을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을 기업들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장벽 내지는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담으로 이를 받아들일 경우 회사와 국가의 발전은 물론 해당 기업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할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해 보면, IMF 당시 우리의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통해 종전의 구태의연한 일방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의한 각종 거래 관행을 일대 혁신하였기에 IMF의 환란에서 살아 남을 수 있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이다. 앞으로 기업들은 공정거래법을 업무와 회사 정책에 반영시켜 이를 즐기는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함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한편, 정부도 공정거래법을 통해 단순히 규제

일변도와 제재 일변도의 정책으로 기업을 다룰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즐기면서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현재 표시광고, 하도급, 약관 등과 같이 모든 사건이 위원회에 집중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공정거래 협회' 등과 같은 민간기구에 과감히 이양시켜 업체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하고, 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쟁을 촉진하고 자율경쟁을 저해하고 제한하는 요소를 지속적으로 철폐해 나가는 연구에 앞장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공정경쟁 지수 같은 것을 개발하여 기업들이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 수여하는 상을 수여할 경우 1년간 국세청 조사를 제외해 주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지 않는 사건에서 경미한 법 위반이 있을 경우 판정된 별칙등급보다 1등급 낮은 별칙을 부여하는 등의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면 좀 더 확실한 제도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이 있어야 존재하고, 기업 역시 거래 상대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 이 모두가 상생(相生)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적 상거래 질서인 공정거래법 준수일 것이고, 위원회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기본적인 법 준수를 위한 어떤 유인책을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만약 공정거래법만을 위한 법 집행으로 우리의 기업들을 규제 일변도와 제재 일변도로만 몰아갔을 때 진정 그런 기업들이 정부에서 말하는 자생력과 경쟁력을 함께 배양할 수 있는지가 궁금할 뿐이다.

못 살고, 배고프던 시절, 허겁지겁 뛰어가던 시절의 기업이 아닌 이제는 무언가를 이루려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뛰려는 대다수의 기업과 기업인을 위해 우리의 위원회도 한층 성숙된 시각으로 기업과 기업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글을 남겨 본다. **공정**

월간 「공정경쟁」은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본 협회에서 공정한 경쟁질서 분위기 조성과
공정거래제도의 정착을 위해 빌긴하는
월간 「공정경쟁」은 공정거래 관련 전문가들의
참신하고 의욕적인 글을 모집합니다.
논단과 기고문은 물론 수필, 소설, 꽁트, 만화 등
소재를 불문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보내실 곳

주 소: (100-743) 서울특별시 종구
남대문로4가 45 상의회관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거래협회
「공정경쟁」 출판담당자 앞
전 화: (02) 775-8870~2
E-mail: kfca2000@netsgo.com
PC통신: kfca2000(천리안)